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2. 14.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2년 1월 24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2년 2월 4일
- 라. 상정일자: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2. 2.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 가. 제안이유
 - 조문 체계화 및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취지에 맞게 이의 신청 기간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자구 수정 (안 제9조)
 - 이의신청 기간 정비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본 조례안은

- 조문 체계화 및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취지에 맞게 이의신청 기간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2조에서는 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 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과 불일치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60일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 본 조례안은

-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달리 규정된 법정민원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법령근거 없이 이의신청 기간(15일)을 정했던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적법하고 공정하게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60 호
----------	---------

제출연월일: 2022. 1.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조문 체계화 및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취지에 맞게 이의 신청 기한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자구 수정 (안 제9조)

나. 이의신청 기한 정비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1. 12. 30. ~ 2022. 1. 19.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제11조에 따른”을 “심의결과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15일”을 “6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 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3. (생략)</p> <p>4. <u>제11조에 따른</u>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p> <p>5. (생략)</p> <p>②·③ (생략)</p> <p>제12조(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u>15일</u>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p> <p>② (생략)</p>	<p>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심의결과의</u> ----- ---</p> <p>5.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이의신청 등) ① ----- ----- ----- <u>60일</u> ----- ----- -----.</p> <p>② (현행과 같음)</p>